

## 신한카드 EDC 서비스 가입 신청서

※ 아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자번호		가맹점번호	
가맹점명		전화번호	(     )
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	
주 소			
개시요청일	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 (개시요청일은 약 1주일 정도 여유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		

※ 가맹점에서 원하시는 항목에 'V'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b>매출전표 접수방법</b>	<b>1</b>	전표회수용 봉투 신한카드 송부 (매월 1일 ~ 말일까지의 매출 발생분은 익월 5일까지 송부)
	<b>2</b>	일정기간 가맹점 보관후 당사 지점 내사하여 접수

본 가맹점은 신한카드 EDC 서비스 특약을 승인하고, 동 특약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EDC 서비스를 신청 합니다.

년	월	일	대표자성명	(인)
---	---	---	-------	-----

# 신한카드 EDC 서비스 특약서

\_\_\_\_\_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신한카드주식회사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“갑”과 “을”의 신용판매 대금정산을 위하여 EDC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한다.

## 제1조 (목적 및 용어의 정의)

“EDC 서비스”란 원활하고 신속한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하여 “을”의 승인내역을 검증한 후 이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을 하는 업무를 말하며, 이 특약은 “갑”과 “을”간의 신용판매대금 정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신용판매 대금의 지급)

“을”은 “갑”이 취급한 신용카드거래의 승인내역을 검증한 후, 거래에 하자가 없을 경우 “을”이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신용판매 대금을 “갑”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다.

## 제3조 (거래승인 및 매출취소)

- “갑”은 모든 신용판매의 거래승인을 반드시 카드뒷면의 자기테이프(Magnetic Stripe)를 조회기의 관독홈에 읽히는 방식(이하 “SWIPE 방식”이라 한다)으로 거래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단말기 고장, 통신회선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거래승인이 불가할 경우 전화로 승인을 득하여 “을”이 별도로 제공한 매출전표에 카드번호를 압인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신용판매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단말기를 통한 “SWIPE방식” 또는 전화를 통해 즉시 매출취소를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하게 취소 당일에 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익일에 매출취소를 한 후 취소전표를 작성하여 “을”에게 매출전표 인계시 타전표와 함께 제출한다. 단, “갑”이 “을”의 “회원”의 매출취소요청에 대해 매출취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“회원”의 클레임에 대한 책임은 “갑”에게 있다.

## 제4조 (매출전표의 관리 및 제출)

- “갑”은 카드회사용 매출전표를 보관/관리함에 있어 EDC 서비스 신청시 선택한 방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조회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“을”에게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EDC 서비스개시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매출전표를 “을”에게 제시하여 매출대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매출전표는 일자별 거래발생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.
- “을”이 매출전표를 인수하기 이전에 “을”이 특정 매출전표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, “갑”은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매출전표를 “을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이 매출전표를 분실하거나 특정 매출전표에 대한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“을” 또는 “을”의 “회원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, 모든 책임은 “갑”이 전적으로 부담한다.

## 제5조 (부도반환)

- 본 특약에 의한 신한카드 매출발생 후, “을”이 보유하고 있는 승인데이터 내역과 매출전표에 기재된 내역이 불일치하거나, “갑”이 제4조 제4항의 매출전표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“을”이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“갑”이 부정/허위 매출 등 “을”의 가맹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차회 입금할 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도록 한다.
- 도난/분실 카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은, 조사결과 가맹점의 귀책(서명 및 본인여부 미확인 등)이 있다고 확인되었을 때에는 대금지급 이후라도 “을”의 동 대금반환 요청시 “갑”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제6조 (특약의 우선 적용)

EDC 서비스에 대한 본 특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체결한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며,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신한카드 가맹점 약관”에 따른다.

## 제7조 (특약의 해지)

- “갑”이 본 특약을 위반하여 “을”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, 또는 6개월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“을”은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“갑”이 특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“을”에게 서비스 해지요청을 해야 한다.

## 제8조 (특약의 변경 및 유효기간)

- 본 특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특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단, 제7조1항의 경우는 서면 통보 없이도 해지가 가능하다.

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한후,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(갑) 주 소 : \_\_\_\_\_ (을)  
상 호 : \_\_\_\_\_  
대표자 : \_\_\_\_\_ (인)